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9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김민기・김수흥・안민석

조승래 · 김병기 · 서동용

송옥주 · 김병주 · 박상혁

이탄희 · 윤준병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게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한다.

제20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 한 지도등의 간행) ① -----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 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 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 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국가안보를 경우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간행되어야 한다.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시행 지도등의 간행)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 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 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후단 -----. 이 경우 지 신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다.

도등	은 색	맹, 스	백약	등 산	각이상
<u> </u>	구별	할 수	- 있	도록	간행되
어야	한다	<u> </u>			
				•	